

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본 위원회는 ‘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’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위원회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도하며 후원한다.

제3조(임무)

- ① 신학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한다.
- ②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제37조 11, 12, 13항에 따른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)

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공천 10인(여성 1인 이상),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 파송 2인, 당연직 3인(이사장, 총장, 신대원장) 등 15인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임기)

본 위원 중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의 임기는 4년, 이사회 파송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, 신학대학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임원)

- ①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 1인, 서기 1인을 선임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.
- ③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한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(회의)

- ① 정기회는 년 1회(총회 후 30일 이내) 소집한다.
-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안건은 소집 7일 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결의)

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, 신학대학원장을 선임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9조(개정 및 시행)

1.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가 결의하여 총회에 현의한다.
2. 이 규정은 총회(제97회) 통과 즉시 시행한다.

2012년 9월 제97회 총회 제정
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
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